

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I. 기본정보

기 관 명	길음안나데이케어센터		지정일자	2010.02.08
급여유형	재가급여 - 주.야간보호		입소정원	21명
기관의 장	노 * 래		연 락 처	02-940-3510
소 재 지	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9길 46		차량보유 현황	승합차 2대/모닝 1대
비급여항목	식재료비	3,000원(1식)	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	삼성화재
	간식비	1,500(2회)		

II.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센터의 이용 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. 길음안나데이케어센터의 이용 정원은 21명 이다.
2. 이용자 모집 방법: 이용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온라인, 오프라인 등을 통해 모집한다.
<기관 홈페이지, 홍보용 인쇄물, 후원자, 지인, 자원봉사자, 보호자 소개 등>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 약 목 적	- 계약의 목적은 센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급 여 계 약	-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.
계 약 기 간	-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센터와이용자(보호자)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 약 해 제	-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. -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일 때 -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. -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. -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- 이용료는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
배 상 책 임	-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신원인수인 의무	-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- 인적사항, 신변의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-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 이행하여야 한다. - 보호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.
신원인수인 권리	-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 -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 -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. - 이용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용 료	-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.